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2512-62-11001
평가금액	31,329,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김동완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4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김동완	eyJhbGciOiJFUzI1Nils	2025-12-24 10:23:00.0
대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김동완	eyJhbGciOiJFUzI1Nils	2025-12-24 10:15:00.0
심사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김해준	eyJhbGciOiJFUzI1Nils	2025-12-24 10:18: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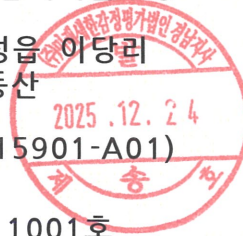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 퇴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건 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5번지 소재 부동산
문 서 번 호 서부산세무서(2025-15901-A01)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512-62-110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55)221-9921 FAX : (055)242-8621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동 완

김

동 완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표자 김 동 완



감정평가액 삼천일백삼십이만구천원정 (₩31,329,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 준 백 (서부산세무서) (2025-15901-A0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의뢰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2-22	2025-12-22	2025-12-23	
감정평가 내용	공부 (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4,810× ¹ ₃	토지	11,603.3333	2,700	31,329,000
			이하	여백		
	합계					₩31,329,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 해 준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5	임야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 34,810x- 3	11,603.3333	2,700	31,329,000	의뢰서상 소유자 지분 자연생임목 포함
합 계								₩31,329,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소재 '황불암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의뢰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이당리 산185	34,810×1/3	11,603.3333	임야	계획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자연림	맹지	부정형 급경사	1,240	-
합	계	11,603.3333	11,603.3333	-	-	-	-	-	-	-

3.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공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2월 22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5년 12월 22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토지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산가액(試算價額) 조정 및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는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가. 일련번호 1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의뢰서상 소유자 지분(1/3)만을 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3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며,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부분이 전체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다. 본건 지상의 임목(林木)은 거래 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일괄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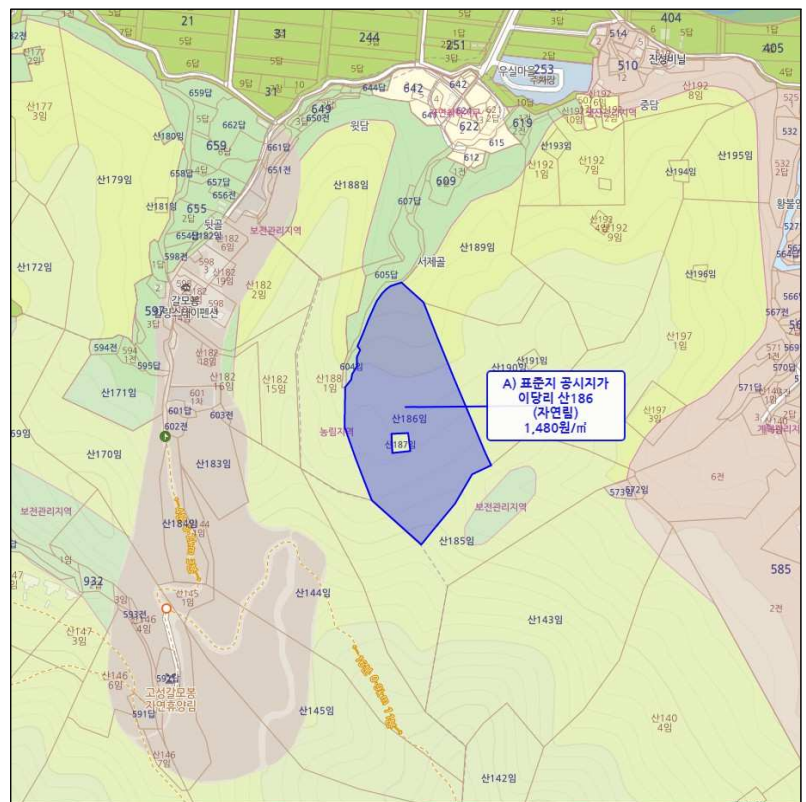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그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5-01-01]

표 준 지	A
소 재 지	이당리 산186
면 적 (㎡)	28,165
지 목	임야
용 도 지 역	농림지역
이 용 상 황	자연림
도 로 교 통	맹지
형 상, 지 세	사다리 완경사
공 시 지 가 (원 / ㎡)	1,4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비교표준지	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A	경상남도 고성군	농림	2025-01-01 ~ 2025-12-22	0.149	1.00149	2025년 10월 연장적용

다.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건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면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6	일부 용도지역에서 우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1.0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농림지역	자연림	맹지	2,500 ~ 2,800	-

3)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원/㎡)	기준시점당시 개별공시지가(원/㎡)
①	장치리 산205-2	임야	14,924	자연림	농림지역	맹지	시가참고	2023-03-31	2,200	967
②	부포리 산11	임야	6,496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맹지	공매	2022-01-03	3,500	753
③ (본건)	이당리 산185	임야	11,603.3333	자연림	계획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맹지	공매	2022-05-27	2,600	1,2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	이당리 산37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14,380	36,760,000	2,556	2024-10-14
	· 토지 추정단가 : $36,760,000\text{원} \div 14,380\text{㎡} \approx 2,556\text{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	이당리 산102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보전관리	20,310	63,000,000	3,101	2022-06-18
	· 토지 추정단가 : $63,000,000\text{원} \div 20,310\text{㎡} \approx 3,101\text{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5) 인근지역의 경매통계 분석

■ 6개월 평균

[출처: 인포케어]

용도	경 남			고 성 군			고 성 읍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토지 / 임야	43.57	42.69	171	31.04	37.03	12	60.72	60.72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가) 비교사례 선정

상기 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비교표준지	선정사례
A	평가사례 ①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식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토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평가사례	①	2,200	1.00558	1.000	1.150	2,544	1.717	
표 준 지	A	1,480	1.00149	-	-	1,482		
산 내 출 역	시점수정	· 경상남도 고성군 농림(2023-03-31~2025-12-22): 1.00558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는 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택지조성)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	1.15	1.00	-	1.00	1.00	1.150
		· 표준지는 평가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감정평가 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등을 종합분석하고, 대상토지의 감정평가 목적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표 준 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	A	1.717	1.71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1,480	1.00149	1.000	1.060	1.71	2,687	2,7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서, 대상토지의 합리성 검토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일련번호	거래사례
1	㉠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	이당리 산37	임야	자연림	농림지역	14,380	36,760,000	2,556	2024-10-14
	· 토지 추정단가 : 36,760,000원 ÷ 14,380㎡ ≒ 2,556원/㎡							
	비 고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事情補正)”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례의 거래시점으로부터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대상토지의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 사례	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	경상남도 고성군	농림	2024-10-14 ~ 2025-12-22	0.249	1.00249	2025년 10월 연장적용

마.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대상토지는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거래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사례)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대등함.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면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6	일부 용도지역에서 우세함.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1.060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	2,556	1.00	1.00249	1.000	1.060	2,716	2,7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2,700	2,700	2,700

4.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산정된 시산가액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 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5. 토지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5	34810×1/3	11,603.3333	2,700	31,329,000	-
합 계		11,603.3333	11,603.3333	-	31,329,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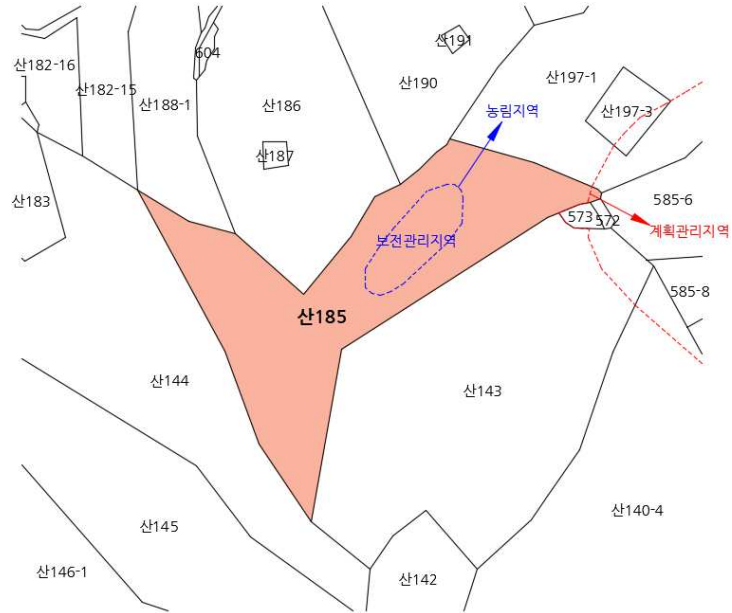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31,329,000	상세내역은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31,329,000	-

- 끝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지 적 개 황 도

N
S :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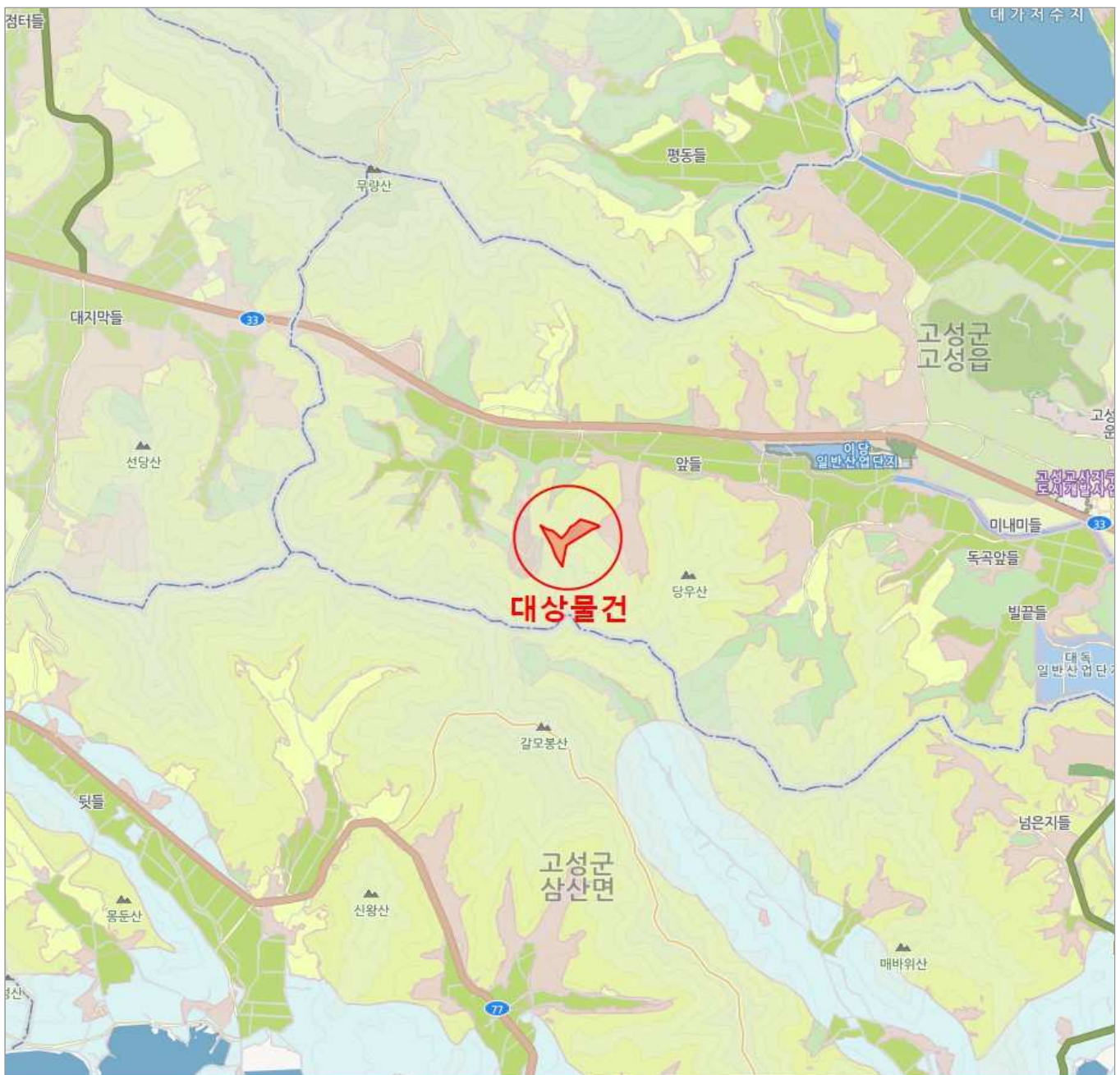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소재 '황불암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 통 상 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접 면 도 로 상 황	맹지임.
지 세 , 형 상 및 이 용 상 황	급경사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젓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경상남도 고시 제2017-252호 (2017. 6. 29.):고성군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 부 와 의 차 이 및 기 타 사 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상 II.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4. 그 밖의 사항 참조.
임 대 관 계 등	미 상 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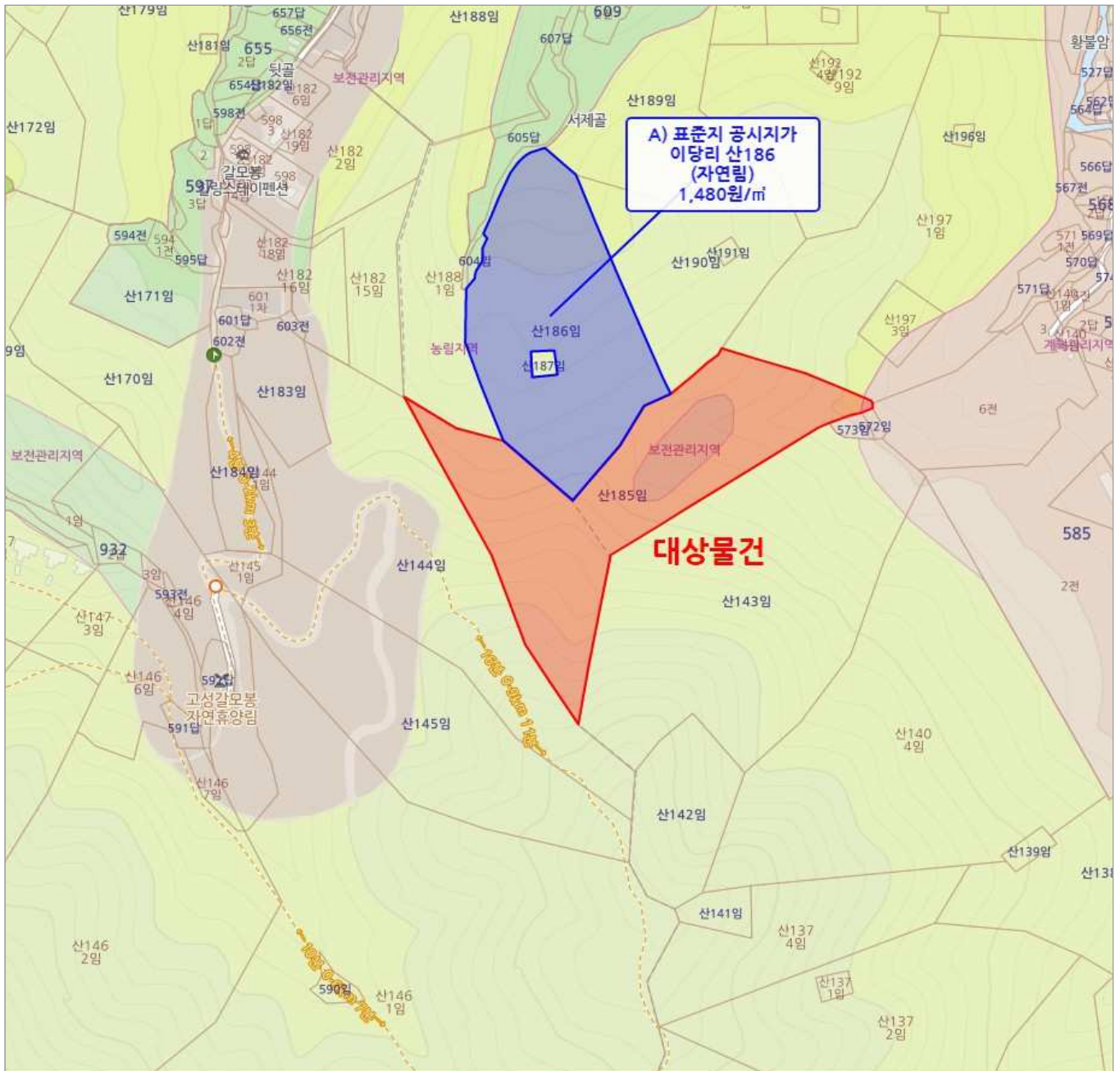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5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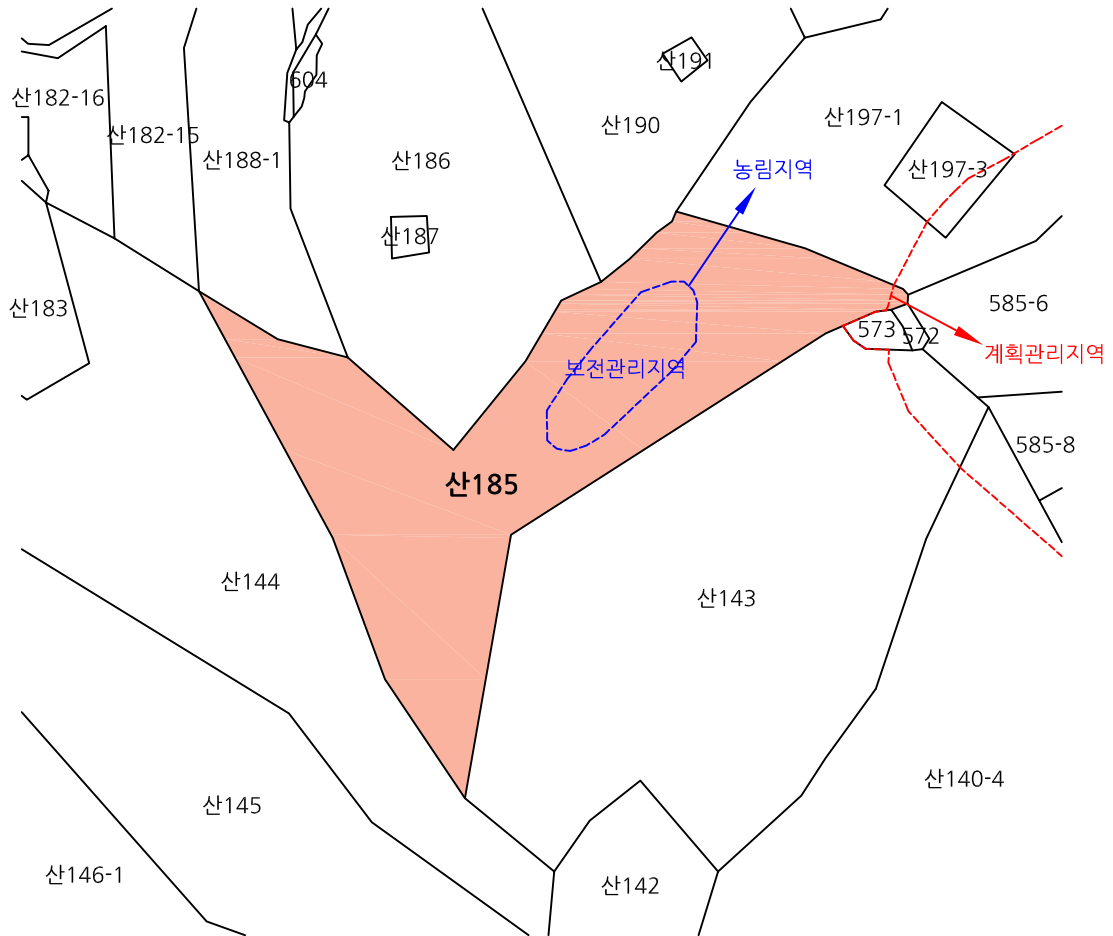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85



지 적 개 황 도



S = None Scale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 로 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본건 및 주변환경



본건